Ⅰ. 서론

1. 연구 목적
2. 연구범위 및 방법
3. 선행연구 검토

Ⅰ. 서론

1. 연구 목적

❍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여 지방분권 확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.

- 행정자치부(이하 '행자부'라 함)에서 실시한 전 자치단체(244개) 2013 회계연도 재정분석(2014.12.24.)에 따르면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가 개선되고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과 경상 세외수입 확충이 전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.

지방세징수율	('12) 96.3%	→	('13) 96.8%(0.5%↑)
경상세외수입	('12) 3.96조	→	('13) 4.33조(0.37조↑)
인 건 비	(기준) 18.1조	→	(결산) 18.0(△0.1조)
의 회 비	(기준) 504억	→	(결산) 445억(△59억)
업무추진비	(기준) 2,139억	→	(결산) 1,696억(△443억)

자료: 행정안전부, 보도자료(2014.12.24.)

❍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가 넘는 법률, 대통령령, 부령, 조례, 협약, 계약 등 다양한 부과근거에 따라 부과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의 종류는 2000여 개가 있으며, 서울시 기준 세외수입의 부과종류는 323개에 달하는 등 아주 범위가 크고 다양함.

❍ 복지재원의 부족 등과 맞물려 요즈음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재원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점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임.

- 지방 세외수입은 전국기준 72조에 달하며 서울시 세외수입 세입도 2013년 결산기준으로 7조 6,893억원임.

❍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전국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각종 현황을 두루 살펴보고 세외수입 징수과목 중 매년 세입

예산의 변동이 심한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닌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들의 징수현황을 살펴보고자 함.

❍ 또한 세외수입 행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에 대하여 조직관리, 전산 시스템관리, 제도운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,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함.

2. 연구범위 및 방법

❍ 세외수입의 범위는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으로 한정지었으며, 행정운영은 서울시청과 서울시내 자치구(25개)의 세외수입 행정 현황을 주로 살펴봄.

❍ 본 연구는 현행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행정운용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세외수입 징수현황, 문헌조사, 선행 연구자료의 참고, 기타 실무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.

❍ 이러한 연구목적과 범위, 연구방법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.

- 제2장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행정의 실태를 징수현황, 조직, 시스템, 제도운영으로 나뉘어 간단하게 살펴봄.
- 제3장은 세외수입 주요 문제점을 추출하고 제4장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3. 선행연구 검토

❍ 세외수입 선행연구는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확충 연구,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연구,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관한 연구, 사용료 및 수수료 증대에 관한 연구, 세외수입 징수통합을 위한 연구, 실증분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.(김대영, 2013)

-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많이 있었으나 가장 최근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, 전반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주된 목표로 각종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재정수요로 인하여 재정확충 가능성이 있는 세목 중심으로 이루어짐.

-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관한 최근연구로는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-'세외수입을 중심으로'(이재호, 2015)가 눈을 끄는데 기존의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 이양, 축제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한다든지,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공유지의 과태료 대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등은 참신하고 새로운 제안이라 할 것임.

- 세외수입 징수법제 발전방향은 2013.8월 6일 제정된 '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'로 인하여 이제 걸음마를 띠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국지적인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(조규일, 2013 ; 한국법제연구원, 2012)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행자부 주도로 법률안의 세부검토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현황임.(마정화, 2015)

- 또한 세외수입 통합법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 세외수입 항목의 과다로 각 개별부처 법령에 근거해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.

- 세외수입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중(배인명, 2015외 다수)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좀 더 실무자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보고자 함.